##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13

발의연월일: 2025. 2. 25.

발 의 자: 박상혁·강준현·최기상

강훈식 • 민병덕 • 박선원

김한규 · 황운하 · 노종면

윤준병·조승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 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해 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세액공제상 영유아 양육을 위한 특례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지급하는 교육비에한정되어 있고 육아 초기의 필수물품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은 없어우리나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육아용품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여 육아용품 에 소요되는 비용의 15%를 세액 공제함으로써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 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4 항"을 "제1항부터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제1 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용품을 구입하고 그 구입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 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자녀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 및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10항"으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 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10항"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용품을 구입하고 그 구입 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되, 자녀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u>⑥</u>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 의 규정-----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 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 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 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⑦・⑧ (생략)
-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 다.
-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 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 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 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 2. (생 략)
- ① 제1항부터 <u>제9항</u>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 제"라 한다.
- ① (생략)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 >

· <u>⑧</u> · <u>⑨</u> (현행 제7항 및 제8항 과 같음) <u>⑩</u>
· 1 - <u>제7항</u>
2. (현행과 같음) <u>①</u> <u>제10항</u>

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 방법 등) ① 제59조의4제1항부 턴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 한법」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 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③ (생 략)

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
방법 등) ① <u>제59</u> 조의4제1항부
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의
규정
②·③ (현행과 같음)